

교육경력 산정 기준

교육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

- ①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의 전임교원으로 재직 한 기간은 100% 산입한다.
- ②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의 비전임교원으로 1학기에 주당 9시간 이상 출강 시, 1학기의 80%를 산입한다.(단, 1학기에 주당 9시간 미만 출강 시에는 1시간당 5%씩 감하여 적용한다)

연구경력 산정 기준

연구경력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

- 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을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3년, 석사 과정은 최대 2년, 석·박사통합과정은 최대 4년까지 산입한다.
- ②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되, 학위를 받지 못한 경우는 그 등록기간의 50%를 경력년수로 계산하되 박사과정은 최대 1년 6개월, 석사과정은 최대 1년까지 산입한다.
- ③ ①항의 박사(석사)학위 취득자가 또다른 박사(석사)학위를 취득한 경우의 경력년수는 ②항의 경우에 적용한다.
- ④ 석사 또는 박사학위소지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은 100% 산입한다.
- ⑤ 기독교교육 담당교원이 종교단체에 재직 한 연수는 50%를 산입한다. 단, 종교단체 재직자라 함은 조직된 교회의 목사 및 연합회 산하기관의 목사를 말한다.
- ⑥ 전공계 공공단체의 재직년수는 50% 산입한다.
- ⑦ 외국어를 전공한 자가 동일계 언어연수를 위해 해외에서 수학한 경우, 최대 1년까지 50% 산입한다.